##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41 발의연월일: 2020. 7. 1.

발 의 자: 박주민·이형석·장경태

김남국 · 오영환 · 전혜숙

박홍근 • 양이원영 • 류호정

황운하 • 홍성국 • 박영순

서동용・윤재갑・이수진비

남인순 • 권인숙 • 이탄희

김두관 • 박성준 의원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부 법조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에 따라 로펌·기업 소속 변호사가 대거 법관으로 임용됨. 이에 따라 법관이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로펌·기업과의 관계에서 청렴한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 지, 이른바 '후관 예우' 논란이 제기됨.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예규」에 따라, 법관이 로펌에서 퇴직·탈퇴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만 해당 로펌이 변호하거나 대리하 는 사건을 배당받을 수 있으나, 각급 법원장이 예규와 달리 배당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있는데다, 기업 사내변호사 출신 법관이 해당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을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금지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함.

이에 법관 자신이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 및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의 재판에서 제척되도록 함으로써, 법조일원화에 따른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8호 및 제9호 신설).

법률 제 호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피해자·증인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재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 9.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기관·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관의 제척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장이 제출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7條(除斥의 原因) 法官은 다음	第17條(除斥의 原因)
境遇에는 職務執行에서 除斥된	
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8.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
	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피
	해자·증인의 대리인인 법무법
	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
	법무법인 재직한 지 3년이 지
	나지 아니한 때
<u> &lt;신 설&gt;</u>	9.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기관·
	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때